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00
------	-----

2009. 7. .  
재정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6.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영기획실장 권영규)

가. 서울창의대상 수여 범위를 확대하고 창의 실행부문을 강화하며, 각 부문별 시상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상시기를 조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서울창의대상 수상범위 : 수상자 ⇒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 창의실행부문 강화 : 연 2회 ⇒ 연 4회 시상

나. 심사의 전문성과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Pool) 중 일정수로 회의를 운영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위원의 참여비율을 제한함(안 제7조)

다. 서울창의상 각 부문 시상등급 체계를 최우수, 우수, 장려로 통일하고, 서울창의대상의 경우에는 시상등급을 폐지함(안 제12조)

라. 각 부문간 포상금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포상금을 조정하고, 창의시책부문의 장려등급을 신설함(안 별표)

##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 령)

### 가. 조례의 개요

-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시상시기와 등급 조정, 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울창의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창의시정 정책의 점검 필요성

- 창의시정 3년째를 맞아 시정 전반에 창의성을 접목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점검이 요구됨.

○ 최근 언론보도(모 일간지 2009년 4월 17일, 4월 28일자)에서도 '차이 보철물 무료제공', '도시 광산화 계획' 등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과장된 정책을 우수정책으로 발표해 지적을 받기도 했음.

○ 특히, 창의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부수적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정에 더욱 주의가 요구됨. 서울시의 대표적인 창의시정 사례 가운데 하나인 '반포 무지개 분수'의 경우 11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운영 초기 물보라가 발생해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끼치기도 했으며, 향후에도 분수 가동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이처럼 창의 우수 사례를 사업시행에 접목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논의와 사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창의시정의 구현과 서울창의상 운영은 경영기획실내 18명으로 구성된 창의담당관에서 맡고 있으며, 2009년 부서 예산은 35억 4,800만원임.

**다. 창의대상 수상범위의 확대와 시상시기의 조정 등(안 제3조 및 4조)**

○ 현재 서울창의상은 각 시상분야에 따라 창의제안부문은 분기별, 창의실행부문, 예산절감부문, 지식경영부문은 반기별, 창의시책부문은 수시로 시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시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부문별 시상시기를 <표 1>과 같이 조정하였음.

<표 1> 부문별 시상시기 조정

시상부문	현행	개정안
창의제안부문	분기별(연4회)	분기별(연4회)
창의실행부문	반기별(연2회)	분기별(연4회)
창의시책부문	수시	반기별(연2회)
예산절감부문	반기별(연2회)	연1회
지식경영부문	반기별(연2회)	정책연구 : 연2회 시민논문·용역자체실행: 연1회
서울창의대상	-	하반기(연1회)

○ 창의실행부문은 제안된 창의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화하는 것이 서울창의상의 시상 목적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시상시기를 창의제안부문과 일치하도록 분기별(연4회)로 조정하는 것임.

○ 창의시책부문은 특별한 시상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시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기별(연2회)로 정하는 것이 운영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2008년의 경우 창의시책분야에 대한 시상이 연2회 실시된 현실을 감안할 때도 적절함.

○ 예산절감부문은 현재 반기별로 시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1회로 시상시기를 변경하고, 지식경영부문의 시상시기를 정책연구와 시민논문·용역자체실행분야에 대한 시상시기와 분리하는 것도 현재의 운

영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임.

- 한편, 각 시상분야 수상자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을 수상대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서울창의대상이 1년 동안 서울창의상 각 부문의 제안과 실행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라. 시상등급의 조정(안 제12조)**

- 각 분야에 따라 시상등급을 달리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등급을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최우수, 우수, 장려의 3단계로 통일하고, 기존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해 시상하던 창의대상을 대상으로만 통일한 것도 혼란을 막고, 창의대상의 권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사료됨.

**마.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효율화(안 제6조)**

- 개정안은 서울창의상 후보들에 대한 공적심사와 시상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해 30인 이내로 구성된 현재의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30인의 위원을 전체 풀(pool)로 활용하여, 이 가운데 15인의 위원을 회의시마다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위원 풀(pool) 중에서 15인의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부서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바. 서울 창의상 포상금 조정(안 제13조 및 별표)**

- 현재 각 부문별로 포상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던 포상금 지급액을 부문별로 균등화하고, 특히 시민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함.

<표 2> 서울 창의상 포상금 조정

(단위 : 천원)

부 문 별	수 상 대 상	조 정 전 포 상 금			조 정 후 포 상 금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창의제안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3,000	2,000
창의실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직원	10,000	5,000	3,000	6,000	4,000	2,000	
창의시책	시 공무원	10,000	5,000	-	10,000	5,000	3,000	
예산절감	시 공무원 시 민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지식 경영	정책연구 분야	시 공무원	5,000	3,000	2,000	3,000	2,000	1,000
	사정연구 분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직원 시 민	10,000	5,000		10,000			

- 아울러 수상시기를 조정하면서 일부 확대되는 시상인원에 대해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도 적절함.
- 다만, 공무원들의 창의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이 활발한 창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사. 규칙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서울창의상의 시상분야, 부문별 수여대상 등 창의상의 기본적인 운영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적시한 바와 같이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와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및 창의상을 수여하기 시작한지 3년째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해당 규칙의 제정 없이 방침에 따라 시상분야와 인원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내부방침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조례와 규칙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창의상 시상분야와 구체적인 시상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 창의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 창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함(수정안 제7조제3항).

####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 7. .  
제정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 창의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 창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함(수정안 제7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수정안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소집에 의한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전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u>심사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여</u>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제3항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이란 정책의 품질제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예산절감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안, 제안 등을 말한다.
2. “창의과제”란 창의제안 중에서 시의 정책 등으로 실행하기로 결정된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창의시책부문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

②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한다.

③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2. 창의실행부문 : 창의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3. 창의시책부문 : 주요 시책사업 등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시의 공무원
4.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 및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5. 지식경영부문 : 상시 학습활동 및 정책연구 성과가 우수한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④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상 시기) 시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창의제안부문 : 분기별(연4회)

2. 창의실행부문 : 분기별(연4회)
3. 창의시책부문 : 반기별(연2회)
4. 예산절감부문 : 연1회
5. 지식경영부문 : 정책연구(연2회), 시민논문·용역자체 실행(연1회)
6. 서울창의대상 : 하반기(연1회)

제5조(수상자 선정)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후보의 공적 심사와 수상자 및 시상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창의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제3항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의담당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추천
2.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시민편익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수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포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부문별		수상대상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강 령
창의제안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창의실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6,000	4,000	2,000
창의시책		시 공무원	10,000	5,000	3,000
예산절감		시 공무원 시 민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지식 경영	정책연구분야	시 공무원	3,000	2,000	1,000
	시정연구분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10,000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이라 함은 정책의 품질제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예산절감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안, 제안 등을 말한다. 2. “창의과제”라 함은 창의제안 중에서 시의 정책 등으로 실행하기로 결정된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이란 정책의 품질제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예산절감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안, 제안 등을 말한다. 2. “창의과제”란 창의제안 중에서 시의 정책 등으로 실행하기로 결정된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창의시책부문 4. 예산절감부문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창의시책부문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

㉔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한다.

㉕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2. 창의실행부문:창의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3. 창의시책부문:주요 시책사업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시의 공무원
4. 예산절감부문: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 및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태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5. 지식경영부문:삼시 학습활동 및 정책연구 성과가 우수한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㉖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분

5. 지식경영부문

㉔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한다.

㉕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2. 창의실행부문 : 창의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3. 창의시책부문 : 주요 시책사업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시의 공무원
4.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 및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태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5. 지식경영부문 : 삼시 학습활동 및 정책연구 성과가 우수한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

㉖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분

야, 수상대상 및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상 시기) 시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창의제안부문:분기별(연 4회)
2. 창의실행부문:반기별(연 2회)
3. 창의시책부문:수시
4. 예산절감부문:반기별(연2회)
5. 지식경영부문:반기별(연2회)

<신 설>

제5조(수상자 선정) ㉑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㉒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㉑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후보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및 시상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야,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상 시기) 시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창의제안부문 : 분기별(연4회)
2. 창의실행부문 : 분기별(연4회)
3. 창의시책부문 : 반기별(연2회)
4. 예산절감부문 : 연1회
5. 지식경영부문 : 정제연구(연2회), 시민논문·용역자제실행(연1회)

6. 서울창의대상 : 하반기(연1회)

제5조(수상자 선정) ㉑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㉒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㉑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후보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및 시상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소집에 의한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 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창의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신 설>**

② 회의는 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추천
2.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제3항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의담당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추천
2.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시민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시민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b>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상한다. 다만,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b> <b>1. 창의제안부문, 창의실행부문, 예산절감부문 및 지식경영부문: 최우수, 우수, 장려</b> <b>2. 창의시책부문 및 서울창의대상: 최우수, 우수</b>	<b>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b>
제13조(부상 등) ①수상자에게는 표창	제13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수상 후 타인의 공격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포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수상 후 타인의 공격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포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 (단위 : 천원)					[별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부문별	수상대상	포 상 금			부문별	수상대상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령			최우수	우 수	장 령	
창의 제안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창의 제안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창의 실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10,000	5,000	3,000	창의 실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6,000	4,000	2,000	
창의 시화	시 공무원	10,000	5,000	-	창의 시화	시 공무원	10,000	5,000	3,000	
예산결감	시 공무원 시 민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결감	시 공무원 시 민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영역 지식경쟁	정책 연구 분야	시 공무원	5,000	3,000	2,000	정책 연구 분야	시 공무원	3,000	2,000	1,000
	시정 연구 분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시정 연구 분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3,000	2,000	1,000
서울창의 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10,000	5,000		서울창의 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민	10,000			